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843
----------	-------

발의연월일 : 2023. 9. 27.

발 의 자 : 진선미 · 이학영 · 이수진
김주영 · 이해식 · 정태호
신정훈 · 임오경 · 최기상
이동주 · 윤관석 · 최혜영
김경협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 관련 비과세 특례와 인지세 면제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 농어민 및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또는 회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으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출자금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작성하는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등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둔화와 농어촌의 고령화로 농어업 종사자들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관련 특례를 강화하거나 지속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지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 등의 실질소득을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88조의5 및 제1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3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생략)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u>2023년 12월 31일까지</u> 작성하는 과세 문서에만 적용	3. ----- ----- <u>2026년 12월 31일</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